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4. 1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8년 4월 6일
-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2018년 4월 12일
- 라. 상정일자: 제20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8. 4. 1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박춘은)

- 가. 제안이유
 -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영등포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안 제4조)
 - 스포츠클럽의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안 제5조)
 - 부정한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최광목)

- 이 제정 조례안은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스포츠클럽의 지원내용, 방법, 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총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3조, 제4조는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 스포츠클럽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서 부정한 보조금의 환수의 규정을 명시하였음.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스포츠 복지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356 호
----------	---------

제출연월일 : 2018. 4.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다. 스포츠클럽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부정한 보조금의 환수 등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생활체육진흥법」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 라. 입법예고(2018.3.22. ~ 3.29. / 7일간) 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환수) 구청장은 제5조의 지도·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